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박준태 · 이만희
정성국 · 최보윤 · 이달희
최수진 · 나경원 · 조정훈
신동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 ·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미국, 유럽연합, 캐나다, 호주,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, 자산동결,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‘마그니츠키 법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

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등).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(중전의 제8호) 중 “제7호까지의”를 “제8호까지의”로 한다.

8.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

가. 침략행위: 무력을 행사하여 타국의 주권 또는 국토의 보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

나.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: 「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침략행위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입국의 금지 등) ① 법무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 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입국의 금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</u> <u>가. 침략행위: 무력을 행사하 여 타국의 주권 또는 국토 의 보전을 실질적으로 침 해하는 행위</u> <u>나.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:</u> <u>「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」 제8조부터 제14조까 지에 해당하는 행위</u>
8. 제1호부터 <u>제7호까지의</u> 규정 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	9. ----- <u>제8호까지의</u> ----- -----

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(생 략)	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